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35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정운천・이철규・권명호

정진석 • 윤창현 • 최형두

홍문표 · 이양수 · 안병길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 처분 기준이 자격증명 효력 정지 60일로 음주 최소요건인 혈중 알콜 농도 0.02~0.06퍼센트의 음주 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종사자가 자신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6퍼센트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부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항공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31호"를 "제1호, 제15호 또는 제31호"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17호"를 "제1호, 제12호 또는 제17호"로 한다.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8호"를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3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 제43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 등명의 취소 등) ① -----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 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5호 또는 제31호-----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등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증명등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소 등)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0]	조에서	"자	격증	명등	"○]	라
한[구)을 취	소하기	니나	1년	0]	내
의	기간을	정하여	겨 겨	라격증	등명	등
의	효력정/	지를 ㅁ	경 할	수	있ા	구.
다	만, <u>제1호</u>	또는	세.	17호	의	어
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느에	는
자	격증명등.	을 취ረ	산하(겨야	하ા	 구.

- 1. ~ 17.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저 증명 등) ① (생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효력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③ (생 략)

<u>제1호, 제12호 또는 제17호</u>
1.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호, 제7호 또는 제</u>
<u>8호</u>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